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1657(2007.5.22)

순서	질 의	답 변
1	두통·현훈·어지러움증의 원인질환을 규명하기 위해 촬영한 MRI의 급여 인정 여부	동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찰 등 진료과정에서 신경학적 소견상 뇌혈관질환 등이 의심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추신경계의 MRI 급여대상 질환이 의심되는 신경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또는 말초신경계 질환을 의심하여 적절한(통상 2주)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은 경우에 실시한 MRI는 요양급여로 인정함(보험급여과-3905호(2005.9.12)).
2	거대세포종(Giant cell tumor)의 MRI 급여 인정 여부	거대세포종(Giant cell tumor)은 양성 골종양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상병의 특성상 재발의 가능성이 높고 전이시 사망할 수도 있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 임상적으로는 악성과 같은 성격을 가진 질환으로,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중 암질환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며, 통상 단순 방사선 소견으로도 진단 및 추적관찰이 가능하나 골내 병변의 범위와 연부조직으로의 침범정도 등을 정확히 알기 위한 MRI 촬영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단순한 상병 분류만으로는 MRI 급여대상인 '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질병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MRI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대세포종(Giant cell tumor) 진단 후 재발 및 전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 관찰시 환자의 상태 등을 참조하여 선별적으로 시행된 MRI 촬영은 급여로 적용함.